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차기명



여수시 조례 제2203호

붙임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203호

##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5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④ 제2조 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는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안)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p>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여수시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6/100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치 가격으로 한다.</p>
<p>2. 토지의 점용</p>	<p>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100</p> <p>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채시기 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5/100</p> <p>마. 관로 등 설치를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0/100</p> <p>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3/100</p>

구 분	산 정 기 준
3. 하천부속물의 점용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6/100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치 가격으로 한다.</p>
4. 유수의 점용	<p>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p> <p>나.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p> <p>다.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 당 63.3원(63.3원/10,000㎡)</p> <p>라.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p> <p>마.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li> <li>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li> </ol>
5. 지하의 유수 채취	제4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6. 배수(주수)	<p>&lt;삭제&gt;</p>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p>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에 걸쳐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 가격 평균치의 15/100</p> <p>나. 가목에 대한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해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p>
8. 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p>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p>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p>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p>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제3조 관련)**

전년 대비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현행	개정안
<p><u>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④·⑤ (생략)</p> <p>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의 점용료 등은 제2조에 따라 산출한다.</p> <p>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③ (생략) &lt;신설&gt;</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 ----- ----- ----- ---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p> <p>---- <u>골재채취를 -----</u> 경우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 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할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p>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⑤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